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5 - 2호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기설비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의 세부기준

제 정 2025. 3. 21.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5 - 1호

제 1차 개 정 2025. 12. 29. 한국전기안전공사 공고 제2025 - 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성적서 발행을 위한 시험·측정자(이하 ‘시험자’라 한다)의 자격·장비와 방법·절차 등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검사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성적서의 작성·발행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업무’란 「고시」 별표 7, 별표 9에 따른 검사항목별 전기설비를 시험·측정하여 성적서를 작성·발행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2. ‘성적서’란 「고시」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험장비를 활용하여 시험자가 작성·발행한 자체시험성적서, 점검기록표 등을 말한다.
 3. ‘검사기관’이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말한다.
 4. ‘시험자’란 시험·측정자의 자격·장비 등의 자격을 갖추고 본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5. ‘시험원’이란 시험자의 인정기준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시험자에 소속되어 시험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시험인력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책임시험원: 검사대상 전기설비 부문별(전기·전기기계·전기토목) 시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인력을 말하며, 작성한 성적서를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성적서는 전기부문 기술사 자격을 갖춘 책임시험원이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나. 선임시험원: 책임시험원을 도와 시험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시험자의 경우 작성한 성적서를 최종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다. 일반시험원: 책임시험원 또는 선임시험원의 시험·측정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공용장비’란 시험자가 시험업무 전용으로 활용하는 주요 계측장비를 말한다.
 7. ‘개인장비’란 시험자가 시험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용 계측기와 안전장비를 말한다.
 8. ‘주관부서’란 「고시」에 따라 시험자의 기준을 운영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담당부서(본사 검사총괄부)를 말한다.
 9. ‘인정부서’란 주관부서 또는 검사기관이 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협회, 단체를 말한다.
-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자의 업무 범위 및 성적서의 인정

제4조(시험자의 구분) ① 시험자 종별은 전문, 종합으로 구분하고, 시험자 부문은 전기, 전기기계, 전기토목으로 구분한다.

② 시험자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종별·부문별 시험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험자의 시험장비 보유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시험자의 업무범위) 시험자는 시험업무의 종별과 부문에 따른 성적서를 작성·발행할 수 있다. 시험원은 3개소 이하 현장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성적서의 인정)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시험자가 작성·발행한 성적서를 인정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2.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3. 피뢰설비, 무정전전원장치, 전기저장장치, 신재생발전설비 등 검사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검사대상 전기설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가 제출하는 성적서는 인정할 수 있다.

제7조(성적서 제출 및 검사 협조) ① 성적서를 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점유자 등은 검사대상별 성적서를 검사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성적서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하지 않을 경우 시험자에게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작성자가 시험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시험방법이나 측정장비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성적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장 시험자의 인정

제8조(시험자의 인정) ① 시험자는 전기설비 검사 및 시험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품질확보를 위해 검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아야 한다.

② 시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종별·부문별 기술자격과 장비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③ 인정신청 또는 인정받은 시험원은 전기안전관리자, 설계, 감리, 시공 등 관련업무에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거나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주관부서는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해소하도록 알려야 하며, 해소하지 않을 경우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⑤ 검사기관은 전문시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시험자의 인정신청

2. 제10조에 따른 인정 및 변경인정

3. 제11조에 따른 시험자의 인정연장

⑥ 전력기술인단체는 제5항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시험자의 인정신청 등) 시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인정 및 변경인정) ① 인정 확인은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시 현장실사는 서류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인정부서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인정부서는 인정 기준에 맞지 않거나 증빙자료가 누락된 경우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기한일까지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인정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④ 인정받은 후 상호명, 시험인력, 장비,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정부서에 변경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인정받은 시험업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1조(시험자의 인정연장) ① 시험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년 주기 3개월 전후로 연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연장확인은 시험인력, 장비, 사무소 등 인정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4장 시험업무 방법·절차 및 기타사항

제12조(시험업무 방법과 절차) ① 시험·측정업무는 운영매뉴얼에 따라 「고시」의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내용에 따른 점검기록표, 수검자 준비자료 서식과 규격을 만족하는 장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설계도서와 「고시」의 검사항목별 세부 검사내용에 맞는 자체 성적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시험자는 동일법인 또는 관계기업이 시공한 검사 대상의 시험업무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서류관리) ① 시험자는 성적서 작성과 발행 등 시험자와 관련 업무의 통계관리를 위하여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험자는 통계관리를 위해 주관부서의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시험자의 인력·장비 보유현황, 시험업무 실적 및 검사 대상별 검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또는 검사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안전확보) 검사업무 현장에 시험원이 입회하는 경우 검사자와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규정 등의 준용) ①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기안전 관련 법령과 검사기관의 운영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소요비용) ① 시험자는 인정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인정확인의 소요비용 납부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관부서의 업무 처리방법 등에 따른다.

부 칙(제2025-1호, 2025. 3. 21.)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서에 관한 적용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성·발행된 성적서에 대해서는 제6조(성적서의 인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부 칙(제2025-2호, 202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서에 관한 적용례) 2026년 2월 28일 이전에 작성·발행된 성적서에 대해서는 제6조(성적서의 인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별표 1] 전기설비 시험자의 세부기준 및 업무범위

1. 시험자 구분

종별	부문	시험인력	시험대상 설비
전문 시험자	전기	선임시험원 2명 일반시험원 1명	- 전압 10만 볼트 미만이고, 설비용량 5천 kw 미만의 전기수용 설비
	전기기계	선임시험원 1명	
	전기토목	선임시험원 1명	
종합 시험자	전기	책임시험원 2명 선임시험원 2명 일반시험원 2명	- 모든 전기설비
	전기기계	책임시험원 1명 일반시험원 1명	
	전기토목	책임시험원 1명 일반시험원 1명	

비고 : 1. 부문별 시험대상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다.

가. 전기: 발전설비, 송·변·배전설비, 수용설비, 피뢰설비, 부지·구조물 등

나. 전기기계: 발전설비(화력, 수력, 풍력, 상용 내연력)의 전기기계설비

다. 전기토목: 화력, 수력, 풍력, 전선로 등의 토목구조물

2. 시험자는 부문별로 구분하여 인정할 수 있다.

3. 2개 부문 이상의 시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시험원은 1명 이상 둘 수 있다.

4. 전기부문 종합 시험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2에 따른 전기부문 기술사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시험대상의 설비용량은 사업장 전기설비 합산 용량을 말한다.

6. 전문(전기부문) 시험자의 시험업무 범위는 영업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7. 전문시험자의 시험대상 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1호의 나~라에 따른다.

8.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전기부문 전문시험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술인력을 인정할 수 있다.

9. 용접은 전기기계 부문에 포함한다.

2. 사무소 및 사업자 등록증 종목

가. 시험업무 전용 사무실(시험장비실을 포함한다)을 갖춘 사업자

나. 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증 사업의 종류 종목에 “전기설비 시험업무” 등 유사종목으로 인정 (공공기관의 경우 직제규정 등 사규 인정 가능)

[별표 2] 전기설비 시험자의 시험원 자격 요건

시험인력	인정(자격)기준
1. 책임시험원	가.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사람
2. 선임시험원	가.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3. 일반시험원	가.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u>해당부문</u>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 다. <u>해당부문</u>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 1. "실무경력"이란 해당 부문의 자격 취득 이후 전기설비의 안전성 유지 또는 성능 확보를 위해 수행하는 검사업무, 안전관리,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준공시험, 정기시험, 감리, 시공관리 경력을 말한다.

2. 기능장은 기사 실무경력에 따르고, 산업기사 자격은 실무경력 2년을 가산한다.
3. "검사업무"란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업무를 말한다.
4. 책임시험원 인정(자격)기준 나목에 해당하는 시험원은 선임시험원 3년 또는 검사업무 3년 이상 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해당 부문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가. 전기 부문

- 1) 기술사: 전기안전,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 2) 기능장: 전기
- 3) 기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나. 전기기계 부문

- 1) 기술사: 기계, 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 2) 기사, 산업기사: 일반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기계설계

다. 전기토목 부문

- 1) 기술사: 토목구조, 토목시공
- 2) 기사, 산업기사: 토목

6. 전기기계·전기토목 부문 선임시험원·일반시험원은 전기 부문 자격자를 해당 시험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7.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분야를 말한다.
8. "관련학과"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4의2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관련학과를 말한다.

[별표 3] 전기설비 시험자의 시험장비 보유기준

부문	장비 세부 종류 및 규격 요건
1. 전기	가. 전문시험자는 다음의 공용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1) 계전기 시험기: 1대 2) 절연유 내압 시험기: 1대 3)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4) 특고압 COS 조작봉: 1대 5)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6)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Q): 1대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8) 수준기, 각도측정기, 거리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각 1대 9) 고압절연장갑: 2벌 10) 고압이상 절연장화: 2벌 나. 종합시험자는 다음의 전용 공용장비를 모두 갖추어 것 1) 6상 계전기시험기: 1대 2) 절연내력 시험기(직류 60kV 또는 교류 30kV): 1대 이상 3) 절연유 내압 시험기(60kV 이상): 1대 4) 절연유 산가 측정기: 1대 5)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일 것): 1대 6)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Q): 2대 7) 전기품질분석기(전압, 전류, 전력, 역률, 고조파의 측정 및 저장이 가능할 것): 1대 8) 정밀접지저항계(전기적연속성, 대규모접지극 측정 기능 포함): 1대 9) 수준기, 각도측정기, 거리측정기, 도막두께측정기: 각 1대 10) 특고압 COS 조작봉: 2대 11) 고압절연장갑: 2벌 12) 고압이상 절연장화: 2벌 다. 시험자는 다음의 개인장비를 전체 시험인력이 갖추어 것 1) 접지저항 측정기(0~1,000Ω ±5.0%급) 2) 절연저항 측정기(250V, 500V) 3) 클램프미터 4) 기타 개인 안전장구: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활선접근경보기(안전모와 손목 부착형), 절연화, 보안경, 절연안전모

2. 전기기계	가. 다음의 공용장비를 모두 갖추 것 1) 시험대상 기계설비(발전기 포함)에 대한 계기(압력, 온도, 진동, 회전수, 유량 등) <u>검·교정용 시험장비: 1대</u> 2) 안전밸브 검·교정용 시험장비: <u>1대</u> 3) <u>터빈발전기 조립 관련 간극·축계평형 측정장비: 각 1대(단, 터빈발전기가 시험 대상일 경우에만 해당)</u> 4) 가연성가스 누설 측정장비: <u>1대</u> 5) 볼트 체결용 <u>토크 측정장비: 1대</u> 6) 풍력 블레이드 특성(열경화도, 무게, 모멘트 등) 시험장비: <u>각 1대</u> 나. 다음의 개인장비를 전체 시험인력이 갖추 것 1) 기타 개인 안전장구: 고압·특고압 검전기 및 저압검전기, 활선접근경보기(안전모와 손목 부착형), 절연화, 보안경, 절연안전모
3. 전기토목	가. 다음의 공용장비를 모두 갖추 것 1) <u>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측정용): 1대</u> 2) <u>측량기(설비위치(기준점) 좌표값 측정용): 1대</u> 3) <u>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1대</u> 4) <u>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1대</u> 5) <u>철근탐사장비: 1대</u> 6) <u>도막(도로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mm 이하일 것): 1대</u> 7) <u>휴대용 복합가스측정기 : 2대</u> 나. 다음의 개인장비를 전체 시험인력이 갖추 것 1) 개인 안전장구: 활선접근경보기(안전모와 손목 부착형), 절연화, 보안경, 절연안전모
비고	1. 2가지 이상의 기능이 있는 장비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위 목록에 없는 장비를 시험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별도로 인정받아야 한다. 3. 검사기관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격 요건에 적합한 장비는 시험장비로 인정할 수 있다. 4. <u>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전문시험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3]에 따른 등록장비를 인정할 수 있다.</u>

[별지 제1호]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변경, 연장)신청서

전기설비

[]종합 시험자

[]전문 시험자

[]인정신청서

[]변경 인정신청서

[]인정 연장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회사명 또는 상호			유선전화:			
	주소(우:)			법인 ☐ 개인 ☐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및 종목			
인정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 · 대표자 · 소재지						
	시험인력						
	인정부문						
	장 비						
	기 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2.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사무실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법인 또는 대표자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포함) 3.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시험원 등 시험인력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시험인력 보유 명세서 1) 시험원 재직확인서(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 중 1종) 나. 시험인력 실무경력 확인서 1) 전기설비 관련 경력관리 기관(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 * 전기부문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검사 및 시험업무 기간에 한함) 2) 실무경력 산정에 기준이 되는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4.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장비 보유 명세서' 가. 시험장비 소유 또는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거래내역서 포함), 임대차계약서 등 나. KOLAS 공인기관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기관이 정하는 성적서	수수료 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	--	----------------------------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변경) 신청서 (뒷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자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 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1항제21 호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관련 성적서, 전기 설비 시험자 인정, 고객만족도조사 등	시험자 유효기간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설비 시험자
또는 시험인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내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기간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권한이 위임·위탁된 기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 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제1항제21 호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 관련 성적서, 전기 설비 시험자 인정, 고객만족도조사 등	성명, 자격,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시험자 유효기간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시험자 인정기간 이후에도 전기설비 이력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전기설비 시험자
또는 시험인력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인력 명세

1	시 험 원	☐ 책임 ☐ 선임 ☐ 일반			
	인정종별			인정부문	
	시험인력	성 명		이 메 일	
		전화번호		자 격	종류) 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동의 ☐ 미동의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2	시 험 원	☐ 책임 ☐ 선임 ☐ 일반			
	인정종별			인정부문	
	시험인력	성 명		이 메 일	
		전화번호		자 격	종류) 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동의 ☐ 미동의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3	시 험 원	☐ 책임 ☐ 선임 ☐ 일반			
	인정종별			인정부문	
	시험인력	성 명		이 메 일	
		전화번호		자 격	종류) 번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동의 ☐ 미동의 ☐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전기설비 시험자 시험장비 보유 명세서

전기설비 시험자 시험장비 보유 명세서

■ 상 호:

[illegible]

[별지 제3호] 전기설비 시험자 인정서

전기설비 [] 종합 시험자 [] 전문 시험자 인정서			
인정번호			
인정연월일		유효기간	
시험자 구분 및 부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무소 소재지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기설비 시험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직인			

[별지 제4호] 전기설비 현장 시험성적서

전기설비 현장 시험성적서
FIELD TEST REPORT

시험자로그

성적서번호(Report No.)
2026-03-0000

시험자 주소
TEL : / FAX :

0 / 0

1. 의뢰자 기본 정보(Client Information)

사업장명 : 대표자명
주 소(설치장소) :
전기안전관리자 소속 : 이름 :
수전설비 전압 : 용량 : [kVA]
발전설비 전압 : 용량 : [kVA]
기타 전압 : 용량 : [kVA]

2. 시험일자(Date of Test) : 년 월 일 ~ 년 월 일

3. 시험대상 전기설비(Test Object) : 시험DATA 별첨(시험대상별 시험자를 기록)

수전설비 전압 : 용량 : [kVA]
발전설비 전압 : 용량 : [kVA]
기타 전압 : 용량 : [kVA]

4. 현장 시험에 사용한 장비(Equipment Used for Testing) / 필요 시 붙임

1) 장 비 명(Model)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 기 번 호(SerialNumber) : 교정유효일자 :
2) 장 비 명(Model)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 기 번 호(SerialNumber) : 교정유효일자 :
3) 장 비 명(Model) : 제작회사 및 형식 :
기 기 번 호(SerialNumber) : 교정유효일자 :

5. 시험결과(Test Results) : 점검결과 '적합, 부적합' / 시험대상별 점검결과를 별첨

6. 참고사항(Point to Note) : '미흡, 특이사항 및 권고사항' 등 주요 참고사항을 작성

7. 시험자 인정번호
(Certificate No) : 0000-0-0000

확 인 (Verification)	총괄작성자 (Test Conducted By)
	직위(Title) : 책임시험원
	자격(Certificate)
	성명(Name) : (서명) 연락처

「전기안전관리법」 제18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21호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현장 시험하고 전기설비 현장시험성적서를 발행합니다.

20 . . .

전기설비 시험자
00000 Electrical Corporation